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0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양경숙・임호선・윤미향

윤재갑 · 홍성국 · 박성준

김영호 · 윤영찬 · 맹성규

이장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전·송금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의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환전·송금관련 사무의위탁범위 확대, 무인기기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외환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지급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 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 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 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 조).

법률 제 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의무"를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의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0조제5항 중 "조치"를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업무상의 <u>의무</u>) ①・②	제10조(업무상의 <u>의무 등</u>)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
	다)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의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
	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
	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
	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
	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0조(보고·검사) ① ~ ④ (생	제20조(보고·검사)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⑤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u>조치</u>	<u></u> 조치
를 할 수 있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